

제26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19년 2월 28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목적 조문의 일부를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함(안 제1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함(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한 일부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함
(안 제3조 ~ 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한 일부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였음.
☞ (현행)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 (개정)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 ▶ **안 제1조**에서는 현행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용 목적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음.

- ▶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이는 개별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¹⁾ 및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²⁾의 소관사항은 심의대상에서 배제하여 위원회의 기능 중복과 업무의 중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대구광역시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별도의 위원회등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 ▶ **그 밖에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음.

- ▶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개별 위원회 구성 완료 등의 사유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의 중복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개별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

- ① 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업무규정 제26조 / 대구광역시 보안업무 규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대구광역시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

2)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 ① 민원조정위원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② 지명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